

2021년도 자체 행정감사 주요 지적사항

<사무국 총무과>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1. 11. 22. ~ 11. 26.(5일간)
※ 추가기간 : 2021. 12. 13. ~ 12. 14.(2일간)
- 감사범위 : 2019. 11월 ~ 2021. 10월(2년간)까지 대학 운영 전반
- 감사대상 부서 : 6개 부서

II 주요 지적사항

연번	지적사항
1	대학회계직원(사무직) 채용 공고 부적정
2	대학회계직원(시설관리직) 채용 공고 부적정
3	병가 사용 시 진단서 미 제출
4	근무(초과) 시간 중 대학원 수강
5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6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7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8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9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10	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
11	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
12	버스 임차 계약 시 교통안전 서류 미 징구
13	예산 집행 부적정
14	교육훈련 여비(일비) 과다 지급
15	타 회계 보조금 대학회계 미편입 및 직접 사용
16	출석 관리 소홀 및 부당 학점 부여 등
17	출석기준 미달 수업 학점취득 및 장학금 수급
18	운영위원회 미 구성
19	운영 위원회 운영 부적정
20	위원회 개의 및 의결 부적정

□ 지적사항 세부내용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
【인사·복무】	
1. 대학회계직원(사무직) 채용 공고 부적정	<p>○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렬(종)에 채용 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하나, ○○○은 채용인원이 1명 임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하였으며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로 공고하였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, 한국교통대학교 계약직원 관리지침 제10조, 국가공무원법 제33조】</p>
2. 대학회계직원(시설관리직) 채용 공고 부적정	<p>○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렬(종)에 채용 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하나, ♣♣♣은 채용인원이 1명 임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하였으며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로 공고하였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, 한국교통대학교 계약직원 관리지침 제10조, 국가공무원법 제33조】</p>
3.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미 제출	<p>○ △△△ 소속 aaa는 총 병가 15일 중 11일은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, 승인권자도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, 의료법 제17조】</p>
4. 근무(초과) 시간 중 대학원 수강	<p>○ ◇◇◇ 소속 bbb는 2020.9.4.부터 2020.9.23.까지 총 9회, 10시간 54분을 근무시간 중에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으며, 초과근무 시간 중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여 초과근무수당 10,8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9장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,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】</p>
【예산·회계】	
5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관리 부적정	<p>○ ○○○은 수입금을 최소 24일에서 최대 194일까지 수입금 출납 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으며, 반환사유 발생 시 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환불하였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편성지침】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
6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	<p>○ ♣♣♣은 수입금을 최소 73일에서 최대 189일까지 수입금 출납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으며, 반환사유 발생 시 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환불하였음.</p> <p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편성지침】</p>
7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	<p>○ ▽▽▽은 수입금을 최소 6일에서 최대 49일까지 수입금 출납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으며, 반환사유 발생 시 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환불하였음.</p> <p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편성지침】</p>
8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	<p>○ ♠♠♠은 ---과정 수강료를 최소 4일에서 최대 272일까지 수강료 출납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으며,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 시 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환불하였음.</p> <p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편성지침】</p>
9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	<p>○ ◎◎◎은 수강료를 최소 4일에서 최대 69일까지 수강료 출납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으며,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 시 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환불하였음.</p> <p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,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편성지침】</p>
10. 수입대체경비 수입금관리 부적정	<p>○ □□□은 --사용료를 최소 2일에서 최대 52일까지 --사용료 출납계좌에 보관 후 대학회계에 지연 불입하였음.</p> <p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】</p>
11.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	<p>○ ♠♠♠은 장학금에 편성해야 될 기숙사 숙식비를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였으며, 다과비를 집행하면서 운영수당에서 지출하였음.</p> <p>【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,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,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】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
12. 버스 임차 계약 시 교통안전 서류 미 징구	<p>○ ♣♣♣는 2019.12.16.부터 2021.9.14.까지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총 10건 미징구하였음.</p> <p>【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 시 정보제공 등 안전강화 방안 추가 보완 사항(교육부 운영지원과-19482, 2015.8.10.)】</p>
13. 예산 집행 부적정	<p>○ ◇◇◇은 떡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떡값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였음</p> <p>【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,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】</p>
14. 교육훈련 여비(일비) 과다 지급	<p>○ ◇◇◇은 여비기준을 초과하여 120,000원을 더 지급하였음.</p> <p>【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5항, 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】</p>
15. 타 회계 보조금 대학회계 미편입 및 직접 사용	<p>○ ◇◇◇은 2019년 --행사경비를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부서운영비 계좌로 입금 받아 참가경비로 사용하였음.</p> <p>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3조, 제2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】</p>
【학사】	
16. 출석 관리 소홀 및 부당 학점 부여 등	<p>○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ccc 등 교수 3명은 ◇◇◇ 소속 bbb 등 2명이 결석하였는데도 총 38회에 걸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,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bbb 등 2명에게 A+부터 A0까지 성적을 부여하여 성적우수장학금 총 853,840원을 지원받게 하였음.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70조,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6조, ●● 학사운영 규정 제42조제2항, ▽▽ 장학 운영지침 제2조】</p>
17. 출석기준 미달 수업 학점취득 및 장학금 수급	<p>○ ◇◇◇ 소속 bbb는 2020.10.13.부터 2021.6.8.까지, 총 29회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 학점(A0~A+)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, 성적우수장학금(2021학년도 1학기~2021학년도 2학기) 총 591,9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...①</p> <p>○ ◇◇◇ 소속 ddd는 2021.3.31.부터 2021.6.14.까지, 총 9회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 학점(A0~A+)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,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금 261,9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...②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63조, 한국교통대학교 학습윤리 강령 제4조, 제6조제1항, 제6조제3항, ▽▽ 장학 운영지침 제2조】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
【기타】	
18. ♡♡♡ 운영위원회 미 구성	<p>○ ♡♡♡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♡♡♡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받지 않았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한국교통대학교 ♡♡♡ 운영 규정 제5조(운영위원회)】</p>
19. □□□ 운영 위원회 운영 부적정	<p>○ □□□은 2018.9.5.~9.10.에 □□□ 운영위원회(서면심의)를 거쳐 규정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, 이후 2020.5.29.에 □□□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거치지 않고 규정을 개정하였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한국교통대학교 □□□ 운영 규정 제4조】</p>
20. 위원회 개의 및 의결 부적정	<p>○ △△△은 --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재적위원 10명의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를 가능하나 5명을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간주하여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였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한국교통대학교 △△△ 운영규정 제4조】</p>